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2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지정 현황

구분	시범운영지구의 명칭	위치	관할 시·도
1	서울 청와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 및 청와대 일원	서울특별시
2	서울 여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및 국회 내부 일원	서울특별시
3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마포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일원	서울특별시
4	충북 혁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 혁신도시 일원	충청북도
5	충남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군 내포신도시 일원	충청남도
6	경북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경상북도 안동시 도청 일원	경상북도
7	경남 하동 농촌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일원	경상남도
8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일원	제주특별자치도
9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성군, 서구 일원	대구광역시
10	서울 청계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청계천로) 일원	서울특별시
11	경기도 시흥시 배곧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정정고시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및 정왕 3,4동 일원	경기도

## 서울 청와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명칭 : 서울 청와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서울특별시

###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 및 청와대 일원(청와대로~사직로~삼청로~ 효자로 )	2.6km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차로(자하문로~사직로~새문안로)	1.2km
계		3.8km

###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지정목적
  - 청와대 개방과 연계한 시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 자율주행버스·일반버스가 공존하는 미래 도심형 교통체계 제시
  -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지원을 위한 체계적 인프라 조성
  - 교통카드 방식을 통한 시민이 친화형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 지정기간 : ' 23. 6. 27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조례의 제정

-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서울특별시 조례”라 한다)를 기 제정 및 시행(시행일 : '21.7월)

○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

- C-ITS 인프라로 시범운행지구 내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전기차 충전소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여객운송 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지원금 지급
- 기타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지원 사항(별도 고시)

○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신호정보 등 제공을 위한 C-ITS 인프라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현재 일부 구간 구축 완료)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설치
- 자율주행자동차 정류소 표지판 및 전용주차구획 설치
- 안전운행 준수 지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여 별도 고시)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에 따름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2대 ( '23년 무상실증 추진)
- 자율주행 서비스·실증 모델
  - 자가용 유상운송 운행 구간 및 범위: 시범운행지구 일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구간 및 범위: 한정면허 발급 범위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청와대-경복궁 순환 노선을 운행	2대

\*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제정 이후)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www.seoul.go.kr/news)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02-2133-4963)

## 서울 여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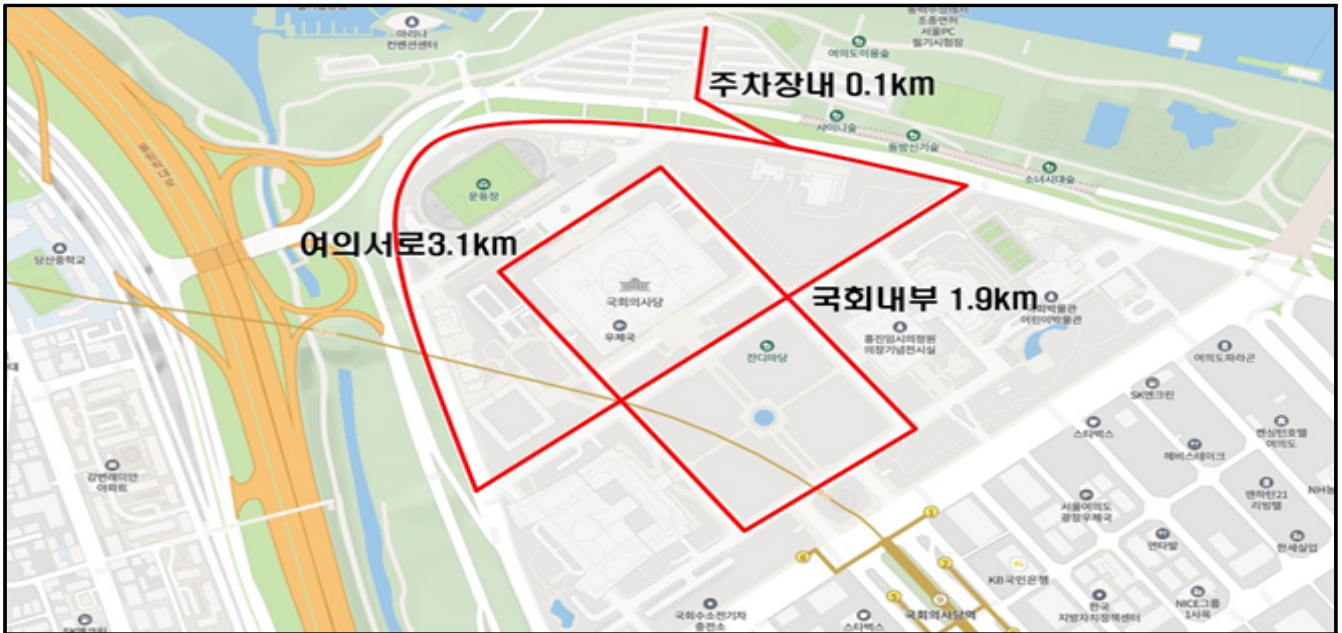
###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명칭 : 서울 여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서울특별시

###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서울특별시 국회 서비스 운영 노선(여의서로)	1.1km
2	서울특별시 국회 서비스 운영 노선(국회내부)	1.9km
3	서울특별시 국회둔치주차장내 도로	0.1km
계		3.1km

###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지정목적
  - 국회~주차장 순환 셔틀 도입을 통한 국회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
  - Park and Ride 개념 서비스 실증
- 지정기간 : '23. 6. 27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서울특별시 조례”라 한다)를 기 제정 및 시행(시행일 : '21.7월)
  -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
    - C-ITS 인프라로 시범운행지구 내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시 설치
  -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신호정보·안전정보 등 제공을 위한 C-ITS 인프라 구축(현재 구축 완료)
    - 자율주행자동차 정류소 안내 정차면 기 설치
    - 안전운행 준수 지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여 별도 고시)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름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2대 ( '23년 무상실증 추진)
- 자율주행 서비스·실증 모델
  - 자가용 유상운송 운행 구간 및 범위: 시범운행지구 일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구간 및 범위: 한정면허 발급 범위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둔치주차장~국회 내부 순환 노선을 운행	2대

\*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

##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 제정 이후)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www.seoul.go.kr/news](http://www.seoul.go.kr/news))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02-2133-4963)

##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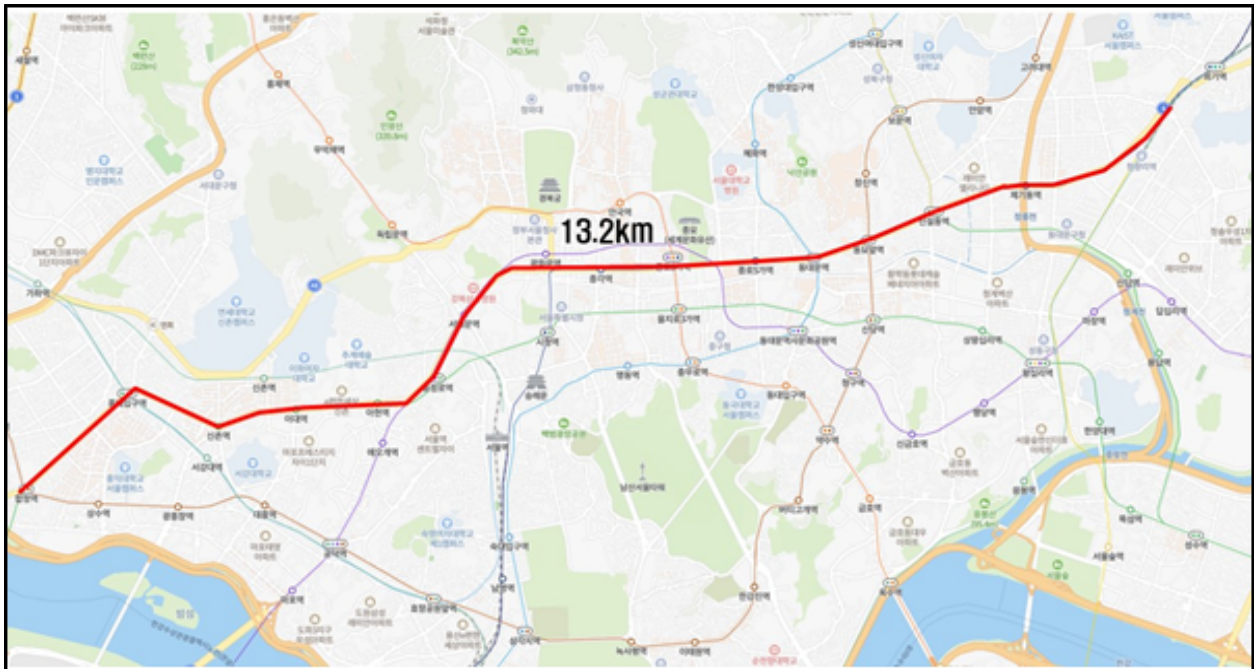
###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명칭 :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서울특별시

###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서울특별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서비스 노선 (양화로 ~ 신촌로 ~ 충정로 ~ 새문안로 ~ 종로 ~ 왕산로)	13.2km
	계	13.2km

###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지정목적
  - 심야 이동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자율주행 심야 버스 운행
  - 야간 실증을 통한 24시간 이용가능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체계 확립
  - 자율차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통한 자율주행 Top 3 도시 실현
- 지정기간 : ' 23. 6. 27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서울특별시 조례”라 한다)를 기 제정 및 시행(시행일 : ' 21.7월)

○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

- C-ITS 인프라로 시범운행지구 내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진입 안내 노면표시 설치
-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여객운송 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신호정보·안전정보 등 제공을 위한 C-ITS 인프라 구축(현재 구축 완료)
- 안전운행 준수 지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여 별도 고시)
- 전 좌석 안전벨트 설치 및 입석 금지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름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5대 ( '23년부터 단계적 확대)
- 자율주행 서비스·실증 모델
  - 자가용 유상운송 운행 구간 및 범위: 시범운행지구 일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구간 및 범위: 한정면허 발급 범위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합정역 ~ 청량리역 중앙차로 노선 등 운행	5대

\*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제정 이후)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www.seoul.go.kr/news)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02-2133-4963)

## 충북 혁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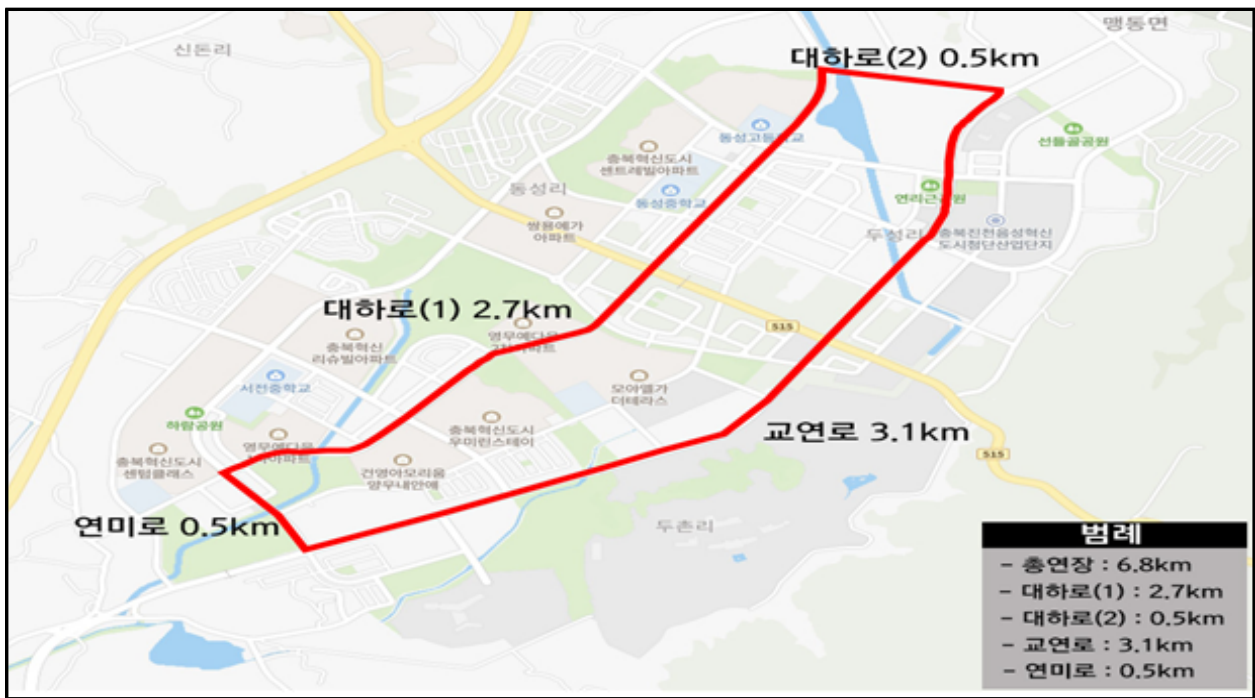
###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명칭 : 충북 혁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충청북도

###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충북혁신도시 관내(연미로 / 선옥마을 사거리~육아종합지원센터 사거리)	2.7km
2	충북혁신도시 관내(대하로(1)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거리~수소안전뮤지엄 삼거리)	0.5km
3	충북혁신도시 관내(대하로(2) / 수소안전뮤지엄 삼거리~꽃어울림단지주차장 삼거리)	3.1km
4	충북혁신도시 관내(교연로 / 꽃어울림단지주차장 삼거리~선옥마을 사거리)	0.5km
계		6.8km

###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지정목적
  - 충북혁신도시내 순환버스 비수혜지역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공급하여 정주여건 개선
  - 에너지 기반 친환경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충북혁신도시의 발전 모델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 대중교통 사각지역에 대한 신규 교통수단 공급을 통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 균형발전의 상징지역인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완성
  -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성공적인 조성 및 스마트시티 확산 기여



○ 지정기간 : ' 23. 6. 27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 5. 시범운영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시범운영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연미로 → 대하로(1) → 대하로(2) → 교연로를 순환하는 도심순환형 자율주행 서비스

○ 시범운영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영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안내 및 정류장 표지판, 필요 시 도로노면표시 등
- 시범운영지구 공동 관리를 위한 충청혁신도시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 추진단 구성(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 청주대학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등 참여)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기타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험운영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고시·공지 예정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10대(' 2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도심순환형 자율주행셔틀	도심에서 정해진 노선을 따라 순환하여 운행하는 셔틀 서비스	

\*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

###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홈페이지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 문 의 처 : 충청북도 과학기술정책과(043-220-8423), 산업육성과(043-220-8474)

## 충남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 1. 시범운영지구의 명칭

- 명칭 : 충남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 관할 시·도 : 충청남도

### 2. 시범운영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내포신도시 흥예공원 주변 홍보 및탑승 체험 구간	2.5km
2	내포신도시 내 방법순찰 구간	7km
3	내포신도시 내 주정차단속 구간	5km
계		14.5km

### 3. 시범운영지구의 지형도



### 4. 시범운영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지정목적
  - 도민(어린이)에게 자율주행자동차 탑승 체험 기회 제공으로 인식 개선 기대
  -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방법 순찰, 주정차 단속(계도) 서비스 제공으로 범죄예방 효과 및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조성 기대
- 지정기간 : '23. 6. 27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영지구의 운행계획의 주요내용

- 시범운영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내포신도시 흥예공원 주변 일대를 운행하는 고정노선 자율주행차 탑승 체험 서비스(L=2.5km)
  - 내포신도시 일대 방범순찰 및 주정차 계도로 깨끗한 환경 및 교통질서 인식 개선을 위한 고정노선 자율주행 서비스(L=12km)
- 시범운영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운행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상황과 도로 환경 등을 파악하여
  - 운행요원 상시탑승 및 철저한 안전 교육 실시를 통한 안전성 확보
  - 사고대응 절차에 따라 대응단계 숙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집 영상 비인식화 및 암호화 수행, 데이터 보안체계 적용
  - 자율주행 운영 시나리오별 안전관리 계획 수립으로 상황별 대처
-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전 안전 사전 검증 실시
  - 자율주행차량 운영을 위해 운행 전 안전관리자 겸 운전자는 상시 배치
  - 자율주행차량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방안 마련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영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통해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운행 표지 부착
  - 비상상황시 단계별 사고 대응 절차 숙지
  - 운행 노선별 신호 및 도로 상황에 따른 교통 안전 준수
  - 본 시범운영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규칙을 준수해야 함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2대(자율주행자동차 승용형 1대, 승합형 1대)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무상 서비스	서비스가 안정화 되기까지 기한을 정하여 무상으로 시범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수의 상한	

\*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문 의 처 : 충남도청 도로철도항공과 미래도로항공팀 (041-635-4695)

## 경북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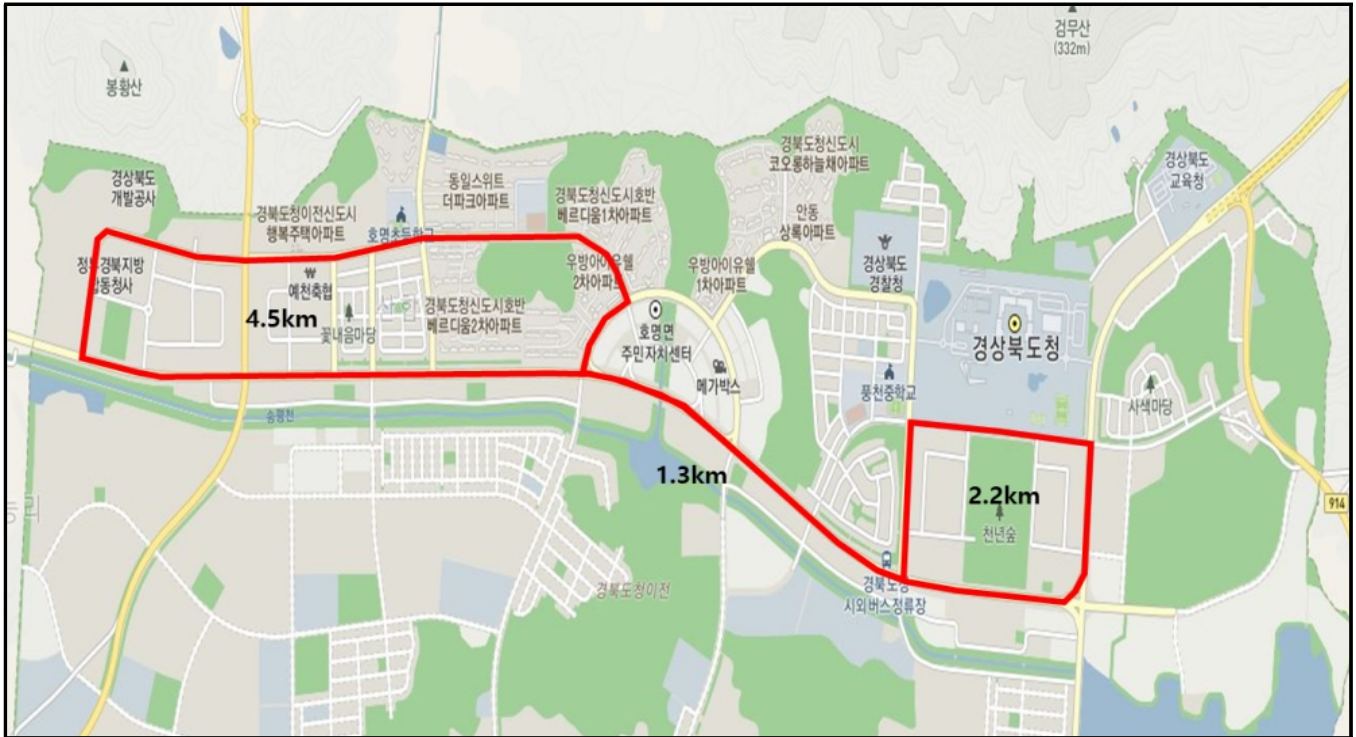
### 1. 시범운영지구의 명칭

- 명칭 : 경북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 관할 시·도 : 경상북도

### 2. 시범운영지구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경북도청~경상북도 개발공사)	8.0km
	계	8.0km

### 3. 시범운영지구의 지형도



### 4. 시범운영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지정목적
  - 도청 신도시 대중교통 공존형 도심 자율주행으로 대중교통 대기시간 감소 등 교통체계 개선
  - 주요 관광지(하회마을), 벽지노선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으로 이동성 강화
  - 도심자율주행 기반 산업 육성 지원 및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 지정기간 : ' 23. 6. 27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 5. 시범운영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시범운영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경북도청 ~ 경상북도 개발공사 구간 도심도로 대중교통 공존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
  - 경북도청 ~ 하회마을 구간 대중교통 공존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
- 시범운영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영 지원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차 전용차고지, 전기차 충전소 및 지원시설 지원 및 관제센터 운영으로 실시간 대응
  - 자율주행 관련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C-ITS 등 주행관련 인프라 구축 추진
  - 기타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로 정하는 지원 사항
  -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경상북도, 관계기관(안동시, 예천군, 경북경찰청 등) 등 비상연락체계 구성
  - 경상북도, 경북경찰청, 안동시, 예천군, 교통·도로관리 부서 및 유관기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시범운영지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강화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
  - 특례를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경상북도 및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운행횟수, 운행시간 이용요금 등에 대해 협의 후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여객운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운행 중 기상 악화 등 비상 상황 시 대응 요령을 포함한 자체 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함
  - 카메라 또는 기타 장치를 활용하여 신호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음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안전운행요건 확인시 검증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이어야 함
-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안전관리요원이 상시 탑승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수동으로 개입하여 운전해야 함
  - 월별 분기별 운행실적 및 정기 성과보고서 등 기타 경상북도의 요청 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함
- 허가대수의 상한 : 총2대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수요응답형 셔틀서비스	정해진 노선을 따라 순환하는 셔틀 서비스	

\*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

##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홈페이지 : 경상북도(www.gb.go.kr)
- 문 의 처 : 경상북도 교통정책과(054-880-2698)

## 경남 하동 농촌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 1. 시범운영지구의 명칭

- 명칭 : 경남 하동 농촌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 관할 시도 : 경상남도

### 2. 시범운영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일원	6.7km
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 화개면 일원	20.4km (중복구간 제외)
합계		27.1km

### 3. 시범운영지구의 지형도



### 4. 시범운영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지정목적
  -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자율주행 기술 도입 및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적 효과성 증대
  - 자율주행 선진기술을 접목한 관광 서비스 연계로 지역 활성화
  - 농촌지역 하동의 다양한 도로·기후·교통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실증 지원
- 지정기간 : ' 23. 6. 27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조례의 제정 계획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예정
-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하동군 하동읍 주요 도로를 순환하는 고정노선기반 수요응답형 셔틀서비스
  - 하동군 하동읍과 화개면을 순환하는 고정노선형 셔틀서비스
-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시범운행지구 내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전기차 충전소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여객운송 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재정지원
  - 신호정보·안전정보 등 제공을 위한 C-ITS 인프라 구축
  - 운행노선에 대한 임시정류장 또는 관련 도로 교통시설 설치
  -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성
  - 시범운행지구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운행 운영규칙 마련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경상남도 조례에 따름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허가 등 본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하동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4대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수요응답형 셔틀서비스	하동읍 일원에서 노선을 수요응답으로 순환하며 운행하는 농촌형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2대
고정노선형 셔틀서비스	하동읍~약양면~화개면 노선을 순환하는 관광형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2대

\*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홈페이지 : 경상남도(www.gyeongnam.go.kr), 하동군(www.hadong.go.kr)
- 문의처 : 경상남도 교통정책과(055-211-4116), 하동군 건설교통과(055-880-2394)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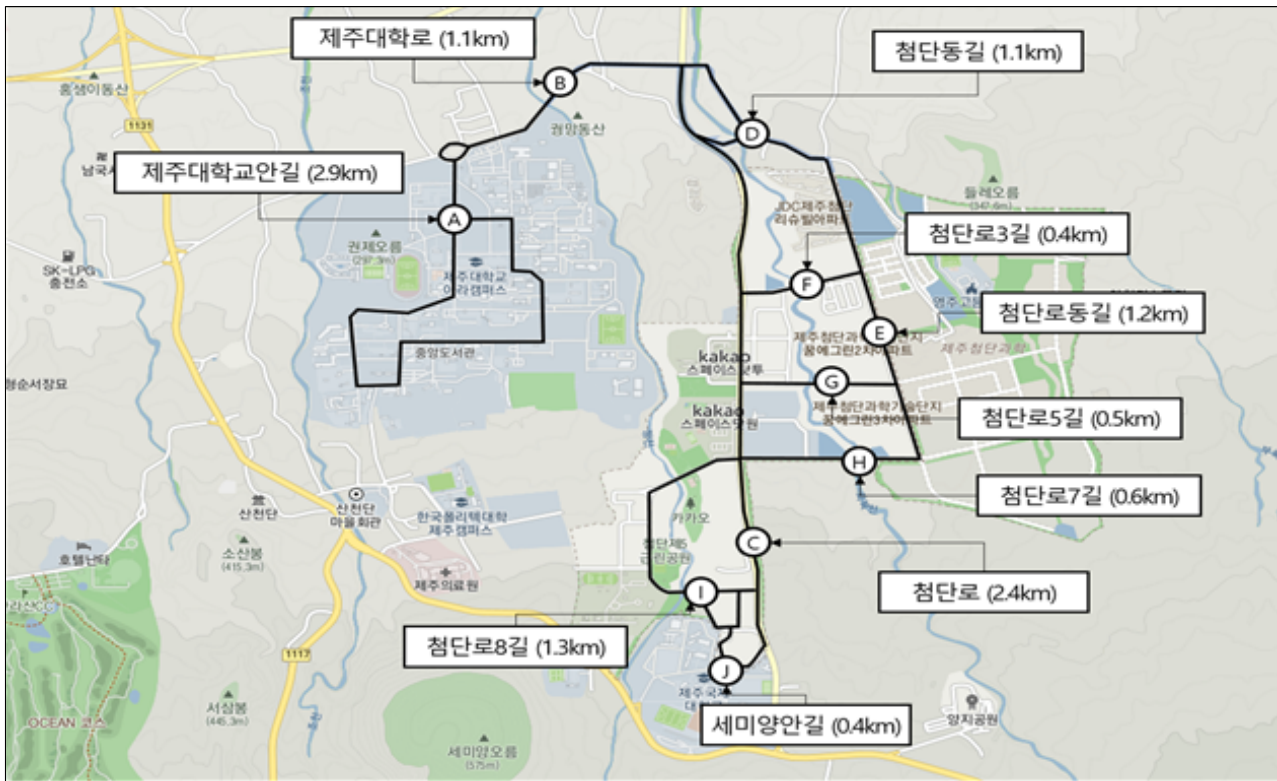
###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명칭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연장 또는 면적
A	제주대학교안길 (제주대정문(입구)~제주대정문(출구))	2.9km
B	제주대학로 (제주대정문~월평1교앞교차로)	0.9km
C	첨단로 (월평1교앞교차로~세미양빌딩 입구)	2.4km
D	첨단동길(월평1교앞교차로~JDC행복주택, 첨단로 진입부~JDC행복주택)	1.1km
E	첨단로동길 (JDC행복주택~첨단로7길 진입부)	1.2km
F	첨단로3길 (첨단로 진입부~첨단로동길 진입부)	0.4km
G	첨단로5길 (첨단로 진입부~첨단로동길 진입부)	0.5km
H	첨단로7길 (첨단로 진입부~첨단로동길 진입부)	0.6km
I	첨단로8길(첨단로 진입부(북)~첨단로 진입부(남), 첨단5교~세미양빌딩)	1.3km
J	세미양안길 (세미양빌딩 입구~첨단로8길 진입부)	0.4km
계		11.7km

###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 4. 시범운영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 지정목적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는 교통 접근성이 낮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교통 음영지역으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구내 이용자의 이용편의 증대 및 이동수요 충족
- 국가산업단지과 제주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으로 도내 첨단산업과 인재양성을 융합하여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신사업으로 육성

○ 지정기간 : ' 23. 6. 27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 5. 시범운영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 시범운영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 시범운영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영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차 운영 작동상태 확인 및 자율주행차량 내외부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상시 신속한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운영인력 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자율주행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자율주행차량 운행, 차량 관리, 승객 편의, 사고 대응 등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관련 전반적인 매뉴얼을 수립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 시범운영지구 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 존재함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차량을 수동운전으로 전환하여 교통약자 보호구역 구간을 통과하며, 기준 속도 30km/h 이하로 주행하여 돌발 사고 발생 위험 축소
-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범운영지구 운영·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안전관리위원회관리’ 운영

계획서비스명	서비스 유형	노선명
노선이 있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무상운송 (수요응답형)	제주대학교 순환노선
		첨단과학기술단지 순환노선
		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대학교 지선노선(상행)
		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대학교 지선노선(하행)
		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대학교 간선노선(상행)
		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대학교 간선노선(하행)

####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홈페이지 : 제주특별자치도청 ([www.jeju.go.kr](http://www.jeju.go.kr))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모빌리티과 자율주행산업팀 (064-710-2652)

##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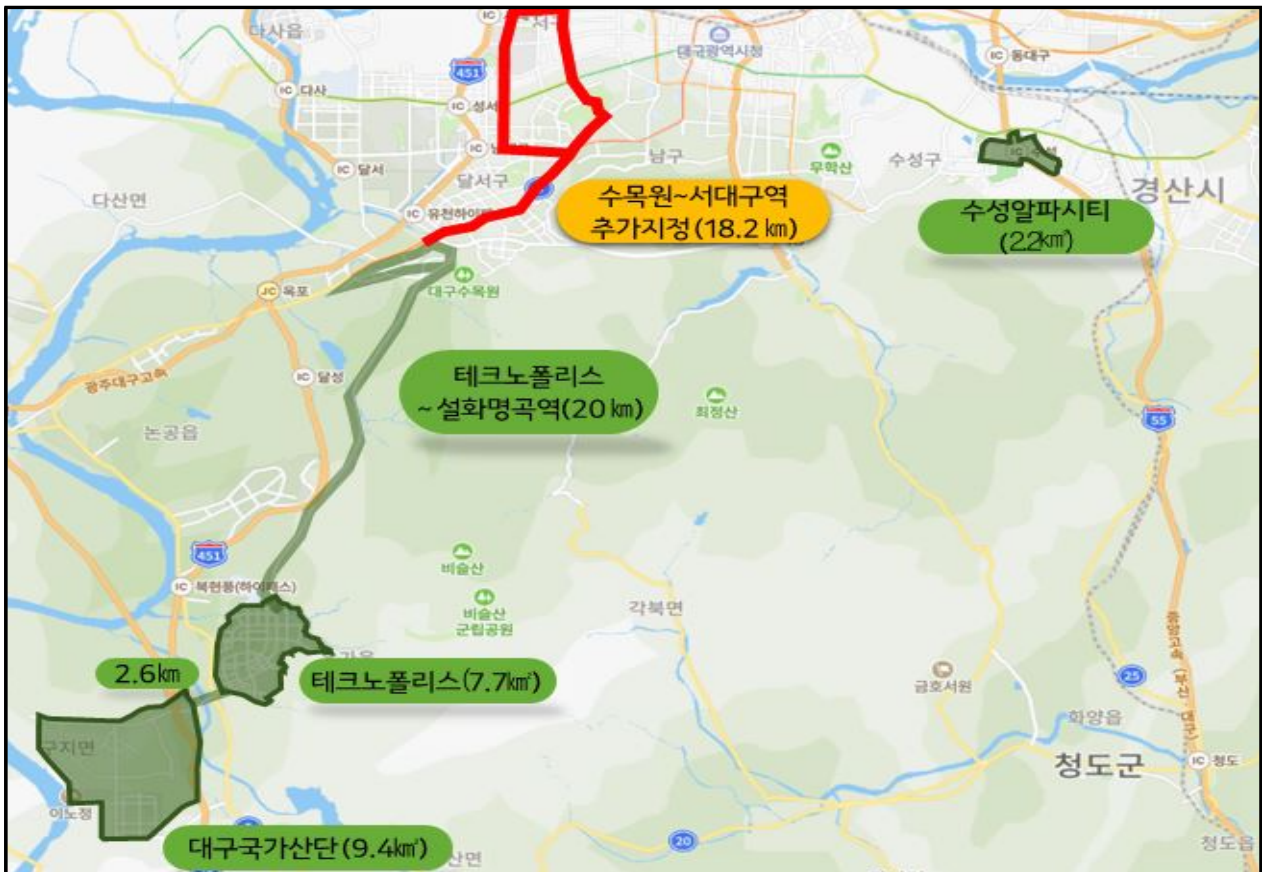
- 명칭 :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대구광역시

###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연장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삼덕·시지·노변동 일원(수성알파시티)	2.2km <sup>2</sup>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유가읍 일원(대구테크노폴리스)	7.7km <sup>2</sup>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구지면 일원(대구국가산업단지)	9.4km <sup>2</sup>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일원(대구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2.6km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설화명곡역 ~ 테크노폴리스로		20.0km
6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수목원 ~ 서구 이현동 서대구역		18.2km
계		19.3km <sup>2</sup>	22.6km

\* 1~4번 : 1차지정( '20.12.8), 5번 : 3차지정( '22.6.24), 6번 : 5차지정( '23.6.27)

###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국토부 고시 제2022-348호 참조)

○ 지정목적

-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도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자율주행차 지원 사업 추진
- 기 추진된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의 결과물을 시범운행지구에서 안전성·경제성을 검증하여 조기 상용화를 유도하고, 테크노폴리스 지구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

○ 지정기간 : ' 23. 6. 27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아래사항 변경(국토부 고시 제2022-348호 참조)

○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및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11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 21.12.30.제정)
-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2.04.11.제정)

○ 시범운행지구 내 도입예정 서비스 범위·구간

- 대구 수성구 대흥·삼덕·시지·노변동 일원(수성알파시티)을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 달성군 현풍읍·유가읍 일원(대구테크노폴리스)을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 달성군 현풍읍·유가읍 일원(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구지면 일원(대구 국가산업단지)을 운행하는 구역운송사업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 서구 이현동(서대구역)~대구수목원~테크노폴리스로 운행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의 연구 실증 및 서비스 기술개발

○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안전도 사전 평가 진행이 가능한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주행시험장을 보유·운영하여 사전 운행 안전 지원 인프라를 갖추었으며, 실제 도로 기반 통합관제센터, 전용 통신망, GIS 시스템, 도로·교통정보 수집 장치, C-ITS인프라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융합지원센터'를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운영
- 시범운행지구에서 연구·시범운행하는 기업 등에 실시간 관제정보 및 안전 서비스(보행자 케어, 도로 감시, 환경 감시, 교통신호 현시 등)를 수신할 수 있는 V2X 단말기 제공 가능
- CCTV, 융합센서(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기반 인프라를 활용 시범운행지구 내 사고 위험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관제 진행
- KOROAD와 진행한 민간신호 개방사업을 통해 구축된 신규표준이 반영된 신호 현시 제공가능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 유관부서, 지방경찰청, 대구 시설공단, 연구기관, 한 운수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시범 운행정구 협의회' 운영
-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 및 지속 업데이트 진행

○ 시범운영지구 지원 방안

-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를 통해 시범운영지구에서 실증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차량 운영비 등 예산 확보·지원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허가조건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름
- 운행 예정 구역에 대한 자율주행차량이 운행가능영역(Operation Design Domain, ODD)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야 하며, ODD Exit 상황 발생시 대응 방안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함
- 도로별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이 가능해야 함
-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 내 관제센터와의 V2X 통신이 가능하여야 함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20대(유상 15대, 무상 5대 등)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마을버스	수성알파시티 도심지 내 순환형 마을버스 유상 운송 서비스	
수요 응답형 여객운송서비스	서구 이곡동 서대구역 ~ 대구수목원 ~ 테크노폴리스로,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단 도심지 내 승용차 기반의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구역 운송 사업	테크노폴리스로,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단 도심지의 변동노선으로 진행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연구개발실증	테크노폴리스로 ~ 수목원 일대 자율주행혁신사업 기술개발실증	

\*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

·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변경없음)

· 기타 운영계획 상 주민 및 특례신청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추가)

- 자율주행차량운행간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하고 유관부서 및 ‘대구광역시 시범 운영지구 협의회’ 에 관련 사항을 제출 필수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홈페이지 : 대구광역시 (<https://www.daegu.go.kr>) ⇨ 정보공개 ⇨ 알림정보 ⇨ 고시공고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미래모빌리티과(053-803-6382)

## 서울 청계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명칭 : 서울 청계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서울특별시

###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서울특별시 청계천로 서비스 운영 노선(1개 도로 총 6.4km)	6.4km
2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등 회차 노선(8개 도로 총 2.4km)	2.4km
3	서울특별시 삼일대로 등 회차 노선(3개 도로 총 1.1km)	1.1km
계		9.8km

\* 1~2번 : 3차지정( '22.6.24), 3번 : 5차지정( '23.6.27)

###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국토부 고시 제2022-348호 참조)

- 지정목적
  - 자율주행을 통한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 보장 및 생산적 시공간 활용을 통한 이동의 가치 증진
  - 자율차 기반 미래 표준 도시공간 재창출
  - 시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험 기회 제공
  - 자율주행환경에서 도로 이용자 안전성 확보 및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차고지 이전(적선동 주차장→예장동 주차장)으로 인한 회차로 추가 지정

○ 지정기간 : ' 23. 6. 27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서울특별시 조례” 라 한다)를 기 제정 및 시행(시행일 : ' 21.7월)

○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

- C-ITS 인프라로 시범운행지구 내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여객운송 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신호정보·안전정보 등 제공을 위한 C-ITS 인프라 구축(현재 일부 구간 구축 완료)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 설치
- 자율주행자동차 정류소 표지판 및 정차면 설치
- 안전운행 준수 지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여 별도 고시)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름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5대 ( '22년부터 단계적 확대)

- 자가용 유상운송 운행 구간 및 범위: 시범운행지구 일원
-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구간 및 범위

구 분	연장(km)	운행경로	대수
운영 노선	6.4	청계광장~청계6가~청계광장(6.4km, 왕복)	5대
회차로(수동주행)	3.6	새문안로, 사직로, 삼일대로 등	-
합 계	9.8	-	-

\* 세부사항은 여객유상운송 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제정 이후)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www.seoul.go.kr/news)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02-2133-4963)

## 경기도 시흥시 배곧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 1. 시범운영지구의 명칭

- 명칭 : 경기도 시흥시 배곧 자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 관할 시·도 : 경기도

### 2. 시범운영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당초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및 정왕 3,4동 일원	12.8km
변경(정정)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및 정왕 3,4동 일원	9.5km
계		9.5km

- 정정사유 : 3차지정(' 22.6.24.) 연장 오기 정정

### 3. 시범운영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영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변경 없음(국토부 고시 제2022-348호 참조)

5. 시범운영지구의 운행계획의 주요내용 : 변경 없음(국토부 고시 제2022-348호 참조)

###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홈페이지 : 경기도청 ([www.gg.go.kr](http://www.gg.go.kr)), 시흥시청 ([www.siheung.go.kr](http://www.siheung.go.kr))
- 문의처 :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자율주행첨단단지팀 (031-8008-5352), 시흥시 철도과 첨단교통팀 (031-310-0730)